

### 3. 骨材採取法

法律 第4428號 1991. 12. 14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 및 기타 지상·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골재채취업”이라 함은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골재채취업자”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초조사”라 함은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부존량·탐도·표토량·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5. “실시조사”라 함은 골재채취대상지역의 토지이용상태 및 수송여건 및 입지 및 관계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제 3 조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 산림법에 의한 산림에 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골재의 수급조정

제 4 조 (골재자원의 조사)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의 골재자원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 기본계획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골재자원에 관한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동력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기초조사 또는 실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동력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실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동력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실시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골재수급기본계획)  
① 건설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골재의 장기수요전망
2. 골재의 장기공급대체

### 3. 골재원의 개발방향

### 4. 기타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시·도지사는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을 총괄·조정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종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 수급계획의 내용 기타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건설부장관은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의 집중개발·비축·수출입조정 기타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8 조 (골재의 집중개발 등) ① 제7조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골재채취업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의 명령을 받은 골재채취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술개발의 권고 등)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개발등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재자원의 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용자
2. 골재채취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자

금의 보조 또는 용자

3. 골재채취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 또는 재해방지시설자금의 용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용자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설치)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기관의 공무원, 지질 및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 계획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5. 기타 골재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심의해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 ①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 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제14조(등록) ①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자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 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제1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이 신고) 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골재채취업자는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등록명의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한 때
6.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때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조치를 계을리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때  
②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실이 판명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당시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①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다.

②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다만,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그 허가체취량의 잔여량이 허가체취량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다.

③시장·군사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2항의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이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감독) ①골재채취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 골재채취현황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 4 장 골재의 채취 등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의 공업권설정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

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장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이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 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채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 구역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2.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석채취 등의 허가
  3.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 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형상변경허가
  4.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7.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8. 관광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1.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안에서의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채취기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채취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 (골재채취 등)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후 6월 이내에 골재채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6월이상 골재채취를 중지하고자 하거나 골재채취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표지의 설치)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골재채취구역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자연환경훼손 및 수질오염 기타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의 허가에 방지시설물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복구비 등을 예치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31조(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일부터 6월 이내에 골재채취에着手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월 이상 골재채취를 중지한 경우
5.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경우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골재채취의 신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원장복구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장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 5 장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① 건설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처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등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골재채취허가 등의 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명령을 하였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조(수용 및 사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취장·적

치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골재채취단지안의 토지(당해 토지에 속한 토석·모래 및 자갈을 포함한다)·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궤도·색도·도로 기타 운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단지외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의 정착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수용 또는 사용)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에 의한 재결신청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고시는 이를 각각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제37조(채석단지에서의 수용 및 사용)

①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로 보아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가 있었음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36조제2항 후단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기간”은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간”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는 “채석허가”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고시”는 “제37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 제 6 장 골재협회

제38조(협회의 설립) ①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전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의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골재채취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제39조(설립인가 등) ①협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

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의 권한은 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가 대행 할 수 있다.

③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임원) ①협회의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총회의 임원의 정수와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도·감독) 건설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7 장 보 칙

제45조 (처분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제46조 (보고) 건설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현황·골재채취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이 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하는 자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8 장 벌 칙

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채취량의 잔여량이 허가채취량의 20퍼센트 이상인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한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  
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  
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공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판단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골재채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  
할 수 있다.

③(골재채취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도시  
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산림법을 제외한  
다)에 의하여 골재의 채취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개정이유 □

주택건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등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골재의 채취에 관한 법령이 다원화되어 있어 허가 및 골재채취에 대한 관리가 복잡하고, 골재자원의 조사 및 수급계획의 총괄조정에 관한 제도의 미비로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무절제한 골재채취에 대한 안전 및 환경보호대책이 미흡하므로 골재자원의 조사 및 수급계획과 골재채취에 대한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골재채취의 원활과 골재채취에 따른 안전 및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1.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여러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2. 골재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골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이 각각 기초조사와 실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건설부장관은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골재수급기본계획과 연도별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3.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국민경제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골재의 집중개발·비축·수출입조정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
4. 골재채취에 관하여 등록제를 도입함.
5.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지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거나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채취구역변경 및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6.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골재채취단지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공익사업용골재를 채취하는 경  
우에는 채취장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